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7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김인호, 안광석, 최영주 의원
(3명)

찬 성 자 : 김춘례, 경만선, 황규복,
문병훈, 김기덕, 김광수,
김정환, 이광성 의원(8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정책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기업의 우수한 산업관광자원과 이를 활성화할 여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120다산콜센터, 자원회수시설 등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견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홍보도 미흡하여 산업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엇박자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산업관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산업을 관광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나. 시장은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역사·문화·예술·자연”을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 기술, 시설,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3항 중 “역사·문화·예술·자연”을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4항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 기술, 시설,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산업을 관광자원 범주에 포함시켜 산업관광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 기술, 시설,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박인근

☎ 02-2180-7934

e-mail : yab0217@seoul.go.kr